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0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2. 9. 6.

라. 회부일자 : 2022. 9. 6.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결산개요

나. 세입·세출의 결산

다. 재무제표

라. 성과보고서

마. 결산서 첨부서류

Ⅳ.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Ⅴ. 검토의견

1.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1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773,455,816,030	821,253,761,229	655,249,227,148	166,004,534,081
일반회계	760,574,643,710	808,844,988,720	647,451,262,768	161,393,725,952
특별회계	12,881,172,320	12,408,772,509	7,797,964,380	4,610,808,129

회 계 별	이월액(D)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35,386,207,040	33,269,458,661	0	10,889,559,363	△195,351,571	0	86,654,660,588
일반회계	34,886,207,040	33,074,229,961	0	10,791,224,963	△195,351,571	0	82,837,415,559
특별회계	500,000,000	195,228,700	0	98,334,400	0	0	3,817,245,029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212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7,734억 5,500만원보다 477억 9,700만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 80%인 6,552억 4,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60억이며,

- 이중 명시이월비 353억 8,600만원, 사고이월비 332억 6,9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6억 9,400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5,400만원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86,654,660,588**	**32,072,968,000**	**54,581,692,588**	
일반회계	82,837,415,559	28,692,533,000	54,144,882,559	
특별회계	3,817,245,029	3,380,435,000	436,810,029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5,400만원으로서 2022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286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 8,0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41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4억 3,600만원을 합한 545억 8,100만원이 2022년도 추경재원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15,715,733,000	7,938,082,000	7,219,952,980	246,097,470	472,031,550
일반회계	15,545,733,000	7,938,082,000	7,219,952,980	246,097,470	472,031,550
특별회계	170,000,000	0	0	0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7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48억5,900만원보다 108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외 25건 79억 3,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2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4,487	4,470	12,732	8,262	38,957
자 활 기 금	935	114	234	120	1,049
노 인 복 지 기 금	353	0	4	4	353
양 성 평 등 기 금	402	54	105	51	456
청 년 미 래 기 금	1,003	530	530	0	1,532
재 정 안 정 화 기 금	17,101	203	203	0	17,303
재 난 관 리 기 금	5,482	2,181	4,956	2,775	7,663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242	△105	138	242	1,138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674	810	2,106	1,296	2,484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4,515	655	4,276	3,622	5,17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59	42	51	9	101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04	△15	27	42	49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73	16	29	13	289
식 품 진 흥 기 금	943	-14	73	87	929

-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44억 8,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7억 3,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억 6,17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89억 5,740만원임.

2. 기획경제국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서 p)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407,653,201,710**	**468,041,824,010**	**451,334,821,720**	**96.4%**
기획예산과	271,206,398,710	304,409,999,570	304,409,999,570	100.0%
지역경제과	10,247,812,000	10,342,147,280	10,342,147,280	100.0%
일자리청년과	4,655,806,000	4,732,666,510	4,732,666,510	100.0%
재무과	3,977,589,000	5,372,156,170	5,372,156,170	100.0%
세무1과	114,936,681,000	140,268,966,630	123,884,540,760	88.3%
세무2과	2,628,915,000	2,915,887,850	2,593,311,430	88.9%

○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 예산현액**은 4,076억 5,320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80억 4,182만 4천원, **세입결산액**은 4,513억 3,482만 1천원으로 **징수율**은 96.4%임.

2)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 액	비율(%)
계	**58,949,399,420**	**33,235,481,045**	**15,279,900,900**	**863,668,461**	**9,570,349,014**	**28.8**
기획예산과	15,377,584,000	6,925,284,023	0	3,153,500	8,449,146,477	54.9
지역경제과	30,930,311,420	14,206,761,912	15,279,900,900	743,406,942	700,241,666	2.3
일자리청년과	11,114,072,000	10,822,457,050	0	112,387,269	179,227,681	1.6
재무과	404,561,000	339,762,790	0	0	64,798,210	16.0
세무1과	486,012,000	401,043,040	0	4,720,750	80,248,210	16.5
세무2과	636,859,000	540,172,230	0	0	96,686,770	15.2

○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589억 4,939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332억 3,548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2억 7,99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8억 6,366만 8천원, **집행잔액**은 95억 7,034만 9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28.8%입니다.

가) 다음연도 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계		**7,569,633**	**5,648,286**	**4,828,048**	**2,558,104**	
지역경제과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4,039,294	2,769,878	2,769,878	**1,174,294**	**(집행시기 미도래)** '22.12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22. 1.~6. 사이 기간중 정산에 따라 지급 예정
지역경제과	지역특화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742,320	341,993	341,993	**400,000**	**(연도내 지출 불가)** 과업이 점포의 디자인 개선과 교육을 통한 상인의 역량 강화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월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지역경제과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1,356,609	1,241,984	1,099,409	**169,170**	**(연도내 지출 불가)** 해체공사 지연 등 설계용역이 11.15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1,431,410	1,294,431	616,768	**814,640**	**(연도내 지출 불가)** '21년5월 설계용역 준공, 7월 상인회 사무실 임시이전 후 8월 착공(공정률 40%)

- 기획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4건 25억 5,810만원 4천원임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계		**12,876,898**	**12,876,860**	**154,663**	**12,721,796**	
지역경제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12,855,898	12,855,898	153,663	**12,701,834**	금년도에 설계비 및 공사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
	남문시장 고객 편의시설 신축	21,000	20,962	1,000	**19,962**	건물 안전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층 건물 전면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 추진

- 기획경제국 사고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2건 127억 2,179만 6천원임.

나)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감액	증액	
기획경제국(3건)			**286,730**	**20,300**	**20,300**	
지역경제과 (3건)	골목경제 지원센터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800	10,000	0	2021 금천구 힘내소 재도약 지원금 사업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
	골목경제 지원센터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407	0	10,000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감액	증액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7,500	7,500	0	2021 금천구 소상공인 힘내소 재도약 지원금 사업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
	골목경제 지원센터운영	306-01 출연금	94,407	0	7,500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30,106	2,800	0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부족
	구로공단노동자 생활체험관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510	0	2,800	

다)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 차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예비비
계	**58,949,399**	**9,570,349**	**16.2**	**159,781**	**2,115**	**148,460**	**1,652,342**	**7,607,651**
기획예산과	15,377,584	8,449,147	54.9	**0**	1,528	19,750	820,218	7,607,651
지역경제과	30,930,311	700,241	2.3	122,714	587	101,910	475,030	0
일자리청년과	11,114,072	179,228	1.6	34,289	0	26,800	118,139	0
재무과	404,561	64,798	16.0	0	0	0	64,798	0
세무1과	486,012	80,248	16.5	2,778	0	0	77,470	0
세무2과	636,859	96,687	15.2	0	0	0	96,687	0

-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집행잔액은 95억 7,034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6.2%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5,978만 1천원, 낙찰차액이 211만 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846만원, 지출잔액 16억 5,234만 2천원, 예비비 76억 765만 1천원임

라) 기금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21,615,752**	**857,063**	**4,478,640**	**3,621,577**	**22,472,815**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17,100,607	202,533	202,533	0	17,303,14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지역경제과	4,515,145	654,530	4,276,107	3,621,577	5,169,675

-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통화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44억 7,864만원이며 **사용액은** 36억 2,157만 7천원으로 최종 2021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4억 7,281만 5천원임.

마) 예비비 결산현황(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115,400**	**113,654**	**0**	**1,746**	
지 역 경제과	지 역 경 제 인프라구축	의 류 제 조 업 체 방 역 체 계 구 축	사무관리비	80,000	78,274	0	1,726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방역물품 지원
	전 통 시 장 활 성 화	전 통 시 장 방 역 체 계 구 축	사무관리비	20,000	19,994	0	6	

부서명	예산과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기업지원 강화	기업지원	사무관리비	5,000	4,986	0	14	
일자리 청년과	공공일자리 제공	새벽 일자리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400	10,400		0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액은 1억 1,365만 4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74만 6천원임.

바.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16.2%임

○ **지역경제과**의 경우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9.4%인 152억 7,990만원으로 그 중 **사고이월이** 예산현액 대비 41.1%인 127억 2,179만원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망됨.

○ 기획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여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1부.

붙임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